1. 제정이유

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(2001. 5. 24, 법률 제6481호)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의 제정 등 후속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행정자치부에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을 두어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시안의 준비, 사무처기구·정원안의 준비,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시안의 준비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나. 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되, 단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단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함(안 제3조).

다. 기획단에 행정지원반 및 법제·운영반을 두되, 행정지원반은 사무처기구·정원안의 준비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고, 법제·운영반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및 위원회규칙 시안의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국무총리 훈령 제420호

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규정안

제 1 조 (목적)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을 둔다.

제 2 조 (기능)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(이하 "기획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 제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시안의 준비
2.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시안의 준비
3.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기구 ·정원안의 준비
4. 그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

제 3 조 (구성) ① 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, 단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단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기획단에 행정지원반과 법제 ·운영반을 두되, 반장은 단원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제 4 조 (단장의 직무)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

사항을 총괄한다.

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행정지원반) 행정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기구 ·정원안의 준비
2.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직원의 충원에 대한 지원
3.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·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사무실 마련 등

제 6 조 (법제 ·운영반) 법제 ·운영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 제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시안의 준비
2.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시안의 준비 등

제 7 조 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 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8 조 (공무원의 파견 등)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·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9 조 (수당 등) 기획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외의 자 및 기획단의 자문 등에 응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운영세칙)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유효기간) 이 훈령은 2001년 11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